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249호 2017. 3. 7(화)

## 차 례

### 규 칙

-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 
일부개정규칙 ----- 1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
입법예고 ----- 7

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

2017년 3월 7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12호

###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 제6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”로, “인천광역시서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”로, “지방세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세법」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재난관리기금”을 “기금”으로, “예탁관리하여야”를 “예탁·관리하여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증식기금”을 “증식 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연”을 “해당연”으로, “예탁관리하고”를 “예탁·관리하고”로, “기금결산후 1월이내”를 “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”로, “예탁관리하여야”를 “예탁·관리하여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3항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용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. 단,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3~5%”를 “3~5퍼센트”로, “거치기간중”을 “거치기간 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자(이하 “채무자”라 한다)가 기간내”를 “사람(이하 “채무자”라 한다)이 기간 내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용자금의 대부 신청)”을 “(용자신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대부신청자”라 한다)는”을 “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”으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신청서”를 “신청 시”로, “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”를 “「여신관리규정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, “의하여 용자승인결정통지서”를 “따라 용자결정 통지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상환기한 전이라”를 “상환기한 전이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관계법령”을 “관계 법령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용자를 받은 사람이 인천광역시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 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,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

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용자금을 대부받은 자”를 “채무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천재지변 기타”를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”로, “기한내”를 “기한내”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30일전”을 “30일 전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기금운용에 관한사항”을 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3.적립금”을 “3. 적립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5.적립금”을 “5. 적립금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( 별지 제2호서식 )

## 재난관리기금 용자금 사용계획서

### 1. 용자신청인

- 주 소 :
- 성 명 : (인) (전화번호 : )
- 생 년 월 일 :

### 2. 재산보유 및 소득상황

- 재산현황(자가,전세,월세,기타) : 원
- 월 소 득 : 원
- 기 타 :

### 3. 용자금 사용계획

- 시설물 현황
  - 위 치 :
  - 용 도 :
  - 면 적 :
- 자금구분 :
- 세부내역 :

### 4. 자금상환계획

### 5. 용자금의 반환

용자금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, 용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

(별지 제3호서식)

### 재난관리기금 용자결정 통지서

**1. 용자대상**

신청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재 난 위험시설	시 설 명			
	위 치			
	조치내용	( )정밀안전진단 등 ( )긴급대피, 이주		

**2. 용자결정내용**

자 금 용 도	총 사업 (이주)비	용 자 신청액	용 자 결정액	용 자 조 건		대출취급 기 관
				대출기간	이 자	
	만원	만원	천원	년 거치 년상환	변동금리 %	

비고) 1. 연체이율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.  
 2. 용자신청자는 용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.  
 3. 용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- 350호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. 3. 7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서구 주민 수가 최근 2년간 연속으로 50만을 초과함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조정 시기가 도래함.
- 2017. 7. 1. 기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행정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안 별표 3)
  - 일 반 직 : 949명 ⇒ 949명 (변동없음)
    - 2급 : 0명 ⇒ 1명 (증 1명)
    - 3급 : 1명 ⇒ 0명 (감 1명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기획예산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560-4042, 팩스 560-2703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개정이유

- 서구 주민 수가 최근 2년간 연속으로 50만을 초과함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조정 시기가 도래함.
- 2017. 7. 1. 기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행정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안 별표 3)
  - 일 반 직 : 949명 ⇒ 949명 (변동없음)
  - 2급 : 0명 ⇒ 1명 (증 1명)
  - 3급 : 1명 ⇒ 0명 (감 1명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” 참조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” 참조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라. 관계 법령 발취 : “별지” 참조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 기 구	직속기관	출장소	동
총 계	953	-				
정무직 계	1	-				
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949	-				
<b>2급</b>	<b>1</b>	<b>1</b>				
4급	6	4	1	1		
5급	60	30	2	6	1	21
6급 이하 계	882	-				
연구직 계	1	-				
연구사	1	-				
별정직 계	2	-				
5급 상당	-	-				
6급 상당 이하 계	2	-				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						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 기구	직속 기관	출장 소	동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 기구	직속 기관	출장 소	동
총 계	953	-					총 계	953	-				
정무직 계	1	-					정무직 계	1	-				
구청장	1	1					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949	-					일반직 계	949	-				
3급	1	1					<b>2급</b>	<b>1</b>	<b>1</b>				
4급	6	4	1	1			4급	6	4	1	1		
5급	60	30	2	6	1	21	5급	60	30	2	6	1	21
6급 이하 계	882	-					6급 이하 계	882	-				
연구직 계	1	-					연구직 계	1	-				
연구사	1	-					연구사	1	-				
별정직 계	2	-					별정직 계	2	-				
5급 상당	-	-					5급 상당	-	-				
6급상당이하 계	2	-					6급상당이하 계	2	-				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 1. 개정이유

- 서구 주민 수가 최근 2년간 연속으로 50만을 초과함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조정 시기가 도래함.
- 2017. 7. 1. 기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 행정발전을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안 별표 1)
  - 일 반 직 : 949명 ⇒ 949명 (변동없음)
  - 2급 : 이사관 0명 ⇒ 이사관 1명 (증 1명)
  - 3급 : 부이사관 1명 ⇒ 부이사관 0명 (감 1명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” 참조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” 참조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라. 관계 법령 발취 : “별지” 참조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·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

직급별	기관별	총 계	본 청	의 회	보건소	보건지소	출장소	동	비고 (행정복지)
총 계		953	614	18	46	16	33	226	(11)
정 무 직 계		1	1						
구 청 장		1	1						
일 반 직 계		949	610	18	46	16	33	226	(11)
2급 소계		1	1						
이 사 관		1	1						
4급 소계		6	4	1	1				
서 기 관		2	1	1					
기 술 서 기 관		2	1		1				
서 기관 · 기술서기관		2	2						
5급 소계		60	30	2	4	2	1	21	
행 정		14	12	2					
의 무		3			2	1			
행 정 · 사 회 복 지		4	4						
행 정 · 공 업		2	2						
행 정 · 녹 지		1						1	
행 정 · 보 건		1	1						
행 정 · 환 경		1	1						
행 정 · 시 설		7	7						
행 정 · 사 회 복 지 · 공 업		2						2	
행 정 · 사 회 복 지 · 농 업		1						1	
행 정 · 사 회 복 지 · 녹 지		1						1	
행 정 · 사 회 복 지 · 보 건		3						3	
행 정 · 사 회 복 지 · 환 경		3						3	
행 정 · 사 회 복 지 · 시 설		4						4	
행 정 · 사 회 복 지 · 방 송 통 신		1						1	
행 정 · 공 업 · 농 업		3	1					2	
행 정 · 녹 지 · 보 건		1						1	
행 정 · 녹 지 · 시 설		2	1					1	
행 정 · 보 건 · 환 경		1	1						

직급별	기관별	총 계	본 청	의 회	보건소	보건지소	2017. 03. 06.(		비고 (행정복지)
							출장소	동	
행정 · 보건 · 시설		1						1	
의 무 · 보건 · 간호		1				1			
행정 · 공업 · 농업 · 시설		1					1		
행정 · 보건 · 간호 · 의료기술		1			1				
보건 · 간호 · 의료기술 · 약무		1			1				
6급 소계		216	159	4	12	4	6	31	
행 정	정	94	71	3			1	19	
세 무	무	7	7						
전 산	산	1	1						
사 회 복 지	지	7	7						
공 업	업	6	6						
농 업	업	1	1						
녹 지	지	4	4						
수 의	의	1	1						
보 건	건	4	3		1				
의 료 기 술	술	2			2				
간 호	호	4			3	1			
환 경	경	6	6						
시 설	설	18	16				2		
방 송 통 신	신	1	1						
운 전	전	5	3	1				1	
기 계 운 영	영	1	1						
행 정 · 세 무	무	6	6						
행 정 · 사 회 복 지	지	15	5					10	
행 정 · 공 업	업	2	2						
행 정 · 농 업	업	2					1	1	
행 정 · 보 건	건	3	2				1		
행 정 · 환 경	경	2	2						
행 정 · 시 설	설	8	8						
행 정 · 녹 지	지	1	1						
행 정 · 방 송 통 신	신	1	1						
녹 지 · 시 설	설	1	1						

직급별	기관별	2017. 03. 06.(							
		총 계	본 청	의 회	보건소	보건지소	출장소	동	비고 (행정복지)
간 호 · 의 료 기 술		2			1	1			
행 정 · 공 업 · 시 설		2	1				1		
행 정 · 보 건 · 간 호		1			1				
행 정 · 보 건 · 환 경		2	2						
보 건 · 간 호 · 의 료 기 술		4			3	1			
행 정 · 보 건 · 간 호 · 의 료 기 술		1				1			
보 건 · 간 호 · 의 료 기 술 · 약 무		1			1				
7급 소계		319	211	6	15	6	15	66	(2)
행 정		111	65	3			2	41	(2)
세 무		29	28				1		
전 산		4	4						
사 회 복 지		28	22					6	
속 기		2		2					
공 업		11	9				2		
농 업		2	1				1		
녹 지		6	6						
해 양 수 산		1	1						
보 건		17	11		4	1	1		
의 료 기 술		4			3	1			
간 호		6			5	1			
환 경		11	11						
시 설		42	37				5		
방 재 안 전		1	1						
방 송 통 신		3	3						
운 전		17	3		1		1	12	
전 화 상 담 운 영		1	1						
기 계 운 영		2	2						
사 무 운 영		9	2	1			2	4	
행 정 · 사 회 복 지		6	3					3	
보 건 · 간 호		1			1				
수 의 · 농 업		1	1						
의 료 기 술 · 식 품 위 생		2			1	1			

직급별	기관별	2017. 03. 06.(							
		총 계	본 청	의 회	보건소	보건지소	출장소	동	비고 (행정복지)
보건·간호·의료기술		2				2			
8급 소계		272	171	4	13	3	11	70	(7)
행정		115	70	2	1			42	(7)
세무		13	12				1		
전산		3	3						
사회복지		38	18					20	
공업		5	5						
농업		1	1						
녹지		6	6						
보건		9	5		2		2		
의료기술		1				1			
간호		5			4	1			
환경		12	12						
시설		34	28				6		
방송통신		3	3						
운전		10	2	1	1		1	5	
전화상담운영		1	1						
기계운영		1	1						
사무운영		3	1	1	1				
전산·방송통신		1	1						
행정·사회복지		3	1					2	
행정·농업		1						1	
보건·공업		1	1						
보건·간호		1			1				
의료기술·식품위생		1				1			
환경·공업		1					1		
보건·의료기술·식품위생		3			3				
9급 소계		75	34	1	1	1		38	(2)
행정		36	12	1				23	(2)
세무		5	5						
사회복지		22	6		1			15	
공업		1	1						

직급별	기관별	총 계	본 청	의 회	보건소	보건지소	출장소	동	비고 (행정복지)
녹	지	1	1						
보	건	1				1			
환	경	2	2						
시	설	4	4						
사 무 운 영		2	2						
행 정 · 환 경		1	1						
연 구 직 계		1	1						
기 록 연 구 사		1	1						
별 정 직 계		2	2						
6급 상당 소계		1	1						
비	서	1	1						
7급 상당 소계		1	1						
비	서	1	1						

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<u>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조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 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b>953</b></td> <td><b>614</b></td> <td>18</td> <td>62</td> <td>33</td> <td>226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b>949</b></td> <td><b>610</b></td> <td>18</td> <td>62</td> <td>33</td> <td>226</td> </tr> <tr> <td>3급 소계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부이사관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 소	동	총 계	<b>953</b>	<b>614</b>	18	62	33	226	일반직 계	<b>949</b>	<b>610</b>	18	62	33	226	3급 소계	1	1					부이사관	1	1					<p>[별표 1] <u>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조 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 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b>953</b></td> <td><b>614</b></td> <td>18</td> <td>62</td> <td>33</td> <td>226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b>949</b></td> <td><b>610</b></td> <td>18</td> <td>62</td> <td>33</td> <td>226</td> </tr> <tr> <td>2급 소계</td> <td><u>1</u></td> <td><u>1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이사관</td> <td><u>1</u></td> <td><u>1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 소	동	총 계	<b>953</b>	<b>614</b>	18	62	33	226	일반직 계	<b>949</b>	<b>610</b>	18	62	33	226	2급 소계	<u>1</u>	<u>1</u>					이사관	<u>1</u>	<u>1</u>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 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b>953</b>	<b>614</b>	18	62	33	2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b>949</b>	<b>610</b>	18	62	33	2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 소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이사관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 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b>953</b>	<b>614</b>	18	62	33	2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b>949</b>	<b>610</b>	18	62	33	2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급 소계	<u>1</u>	<u>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사관	<u>1</u>	<u>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(부시장·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)

⑦ 시·군과 자치구의 부시장·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인구 10만 미만의 시·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: 지방 서기관
2.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·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: 지방 부이사관
3. 인구 50만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 : 지방 이사관

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해당 시·군이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.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매 해 말 인구가 해당 시·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·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한다.